

급식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明年에 追更豫算에 反映하도록 하겠습니다.
 以上 提案説明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沙下區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끝에 실음)

○委員長 具泰會 魯洪大 建設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漢墩 釜山廣域市沙下區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報 告)

□ 큰 거

풍수해 대책법 제3차 개정(법률 제4993호, 1995.12.6)으로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명칭변경과 전문개정코자함.

□ 관련법령

○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
 (내용 :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함)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용 : 방재기본계획작성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 개정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방단 운영조례(1988.5.1 조례 제45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개정

○ 개정요지

-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점검, 정비
- 재해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

계와 주민대표 재해응급대책 등 임무 수행

-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 단원 15인 이상 50인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검토의견

풍수해 대책법 제3차 개정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변경과 전문개정중 수방단 위촉과 재해사전대비에 찰 및 경계에 따른 재해응급대책 임무수행에 따른 조례내용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以上입니다.

○委員長 具泰會 金漢墩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石來 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石來委員 建設課長 수고 많습니다.

李石來 委員입니다.

第6條 편성에 보면 제1항 다호에 보면 재해 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인데 유관기관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제8조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1일부터 5月末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재까지의 교육훈련 실시사항이나 그에 따른 이행결과가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魯洪大 李石來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答辯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의 범위는 우리 사하구 관내있는 사하경찰서, 예비군 3대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대, 그다음 사하체신청, 그 다음에 사하전화국, 상수도사하사업소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